

광
공
업
주
요
동
향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1년 12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2011년 12월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 대비 각각 2.8%, 1.6%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15.5%), 기계장비(-4.6%) 등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2.5%), 자동차(10.7%), 금속가공(9.0%) 등의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2.8%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7.5%), 운수(-1.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5.9%), 금융·보험(5.1%),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3.5%)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함.
- 2011년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6.9%)에서 감소하였으나 광공업(6.9%), 서비스업(3.2%)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대비 3.8% 증가함.
- 2011년 1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한 반면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5.5%),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1.5%),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0.4%)의 판매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함.
 -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 기타기기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자동차 등이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2.1% 감소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중에서 비주거와 전기기계 및 플랜트 등 토목공사, 발주자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실적호조로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함.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에서의 공동주택 및 관공서, 철도 및 토지조성 등의 발주 증가와 민간부문에서의 신규주택 및 향만 등의 발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6.4% 증가함.

- 2011년 소비는 내구재(10.7%), 준내구재(4.4%), 비내구재(1.0%)의 증가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고, 자동차 등 운송장비(-3.7%)의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정밀기기, 일반 기계류 등 기계류(1.3%)의 증가로 투자는 전년대비 0.5% 증가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와 제조업가동률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대비 0.4%p 상승함.
- ◆ 2012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3.4%상승(생활물가지수 3.3%상승)
- 2012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5%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하여 2011년 12월의 4.2%에 비하여 0.8%p하락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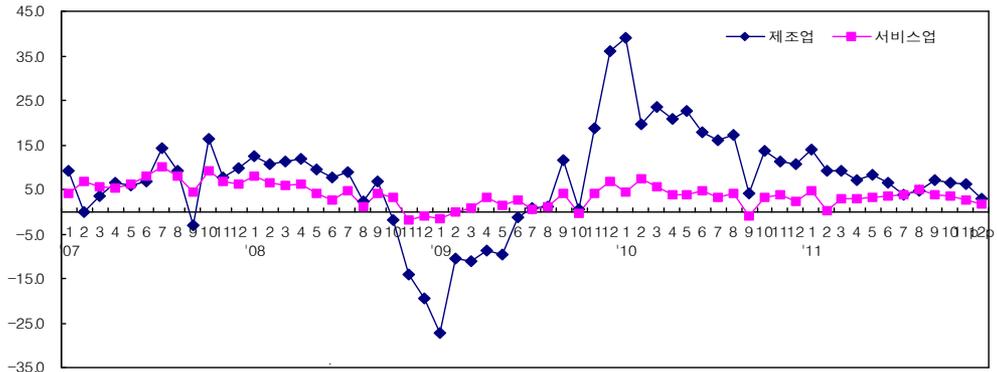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2월	1/4	2/4	3/4p	4/4	12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0.7	10.6	7.2	5.1	5.0	2.8(-0.9)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7	11.0	10.9	7.4	5.1	5.1	2.9(-1.1)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4	10.6	11.9	7.2	5.0	3.3	2.4(0.4)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4.3	7.2	3.8	2.6	0.2	0.8(-0.2)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2	19.6	18.4	11.6	7.9	7.2	4.5(0.9)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5	2.7	3.3	4.2	2.5	1.6(0.0)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6	4.3	5.1	5.7	4.4	1.5	1.5(-0.2)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5.1	7.4	6.6	4.8	-3.5	-5.4	-12.4(0.5)
물가		3.9	2.8	2.0	2.4	2.9	2.7	2.6	2.9	3.6	2.9	3.4	4.8	4.2	4.8	4.0	3.4(0.5)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1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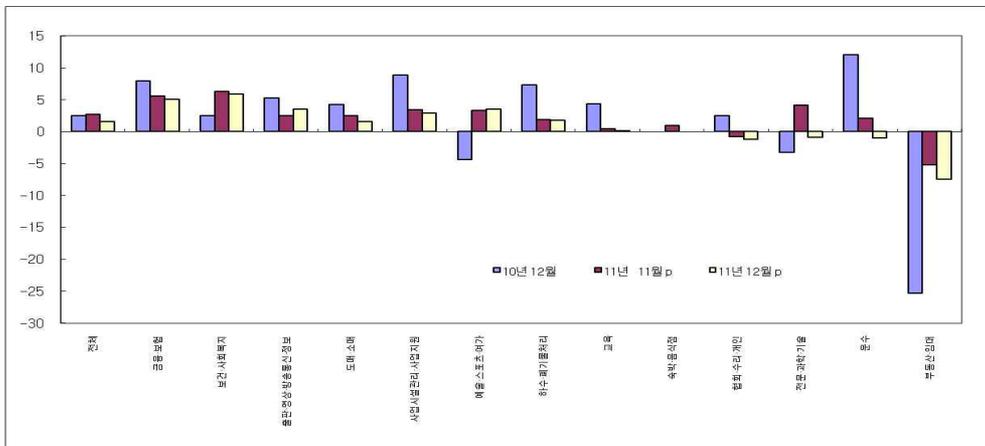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2. 1), 『201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부문(-3.5%)만 하락하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5.9%), 주택·수도·전기·연료(5.3%), 교통(4.4%), 의류·신발(4.3%), 음식 및 숙박(4.0%)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2012년 1월 생활물가지수는 106.0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3% 각각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부문은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상승함.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58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1천 명(2.0%)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485천 명으로 251천 명(1.8%) 증가하였고, 여성은 10,100천 명으로 220천 명(2.2%) 증가하였음.
- 2012년 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1.7%)은 전년동월대비 0.4%p, 여성(47.8%)은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그림 3 좌측 참조).
- 2012년 1월 중 고용률은 57.4%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69.1%로 전년동월대비 0.7%p, 여성의 고용률은 46.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음(그림 3 우측 참조).
- 2012년 1월 중 취업자는 23,7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6천 명(2.3%)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96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2천 명(2.1%)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9,7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4천 명(2.6%)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 2012년 1월 중 실업자는 8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천 명(-7.1%)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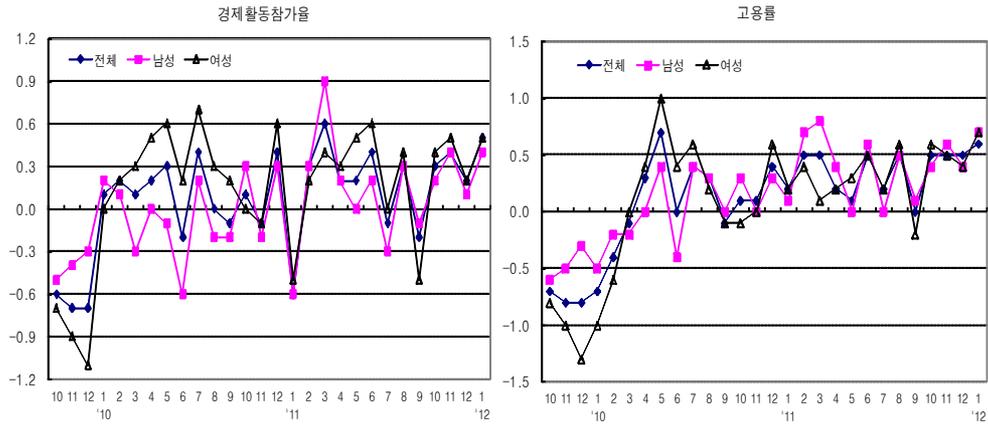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경제활동인구	24,796 (1.4)	24,488 (1.3)	24,114 (0.1)	25,437 (1.6)	25,269 (1.1)	25,202 (1.6)	24,880 (1.4)	24,585 (2.0)
참가율	60.8	59.9	59.0	62.0	61.5	61.1	60.3	59.5
취업자	23,989 (1.5)	23,459 (1.8)	23,196 (1.4)	24,572 (1.7)	24,483 (1.5)	24,462 (2.0)	24,125 (1.9)	23,732 (2.3)
고용률	58.9	57.4	56.8	59.9	59.5	59.4	58.5	57.4
실업자	808	1,028	918	865	786	740	754	853
실업률	3.3	3.9	3.8	3.4	3.1	2.9	3.0	3.5
비경제활동인구	15,962 (0.3)	16,392 (0.8)	16,729 (2.6)	15,559 (0.4)	15,847 (1.2)	16,014 (0.3)	16,394 (0.8)	16,736 (0.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2. 2), 『2012년 1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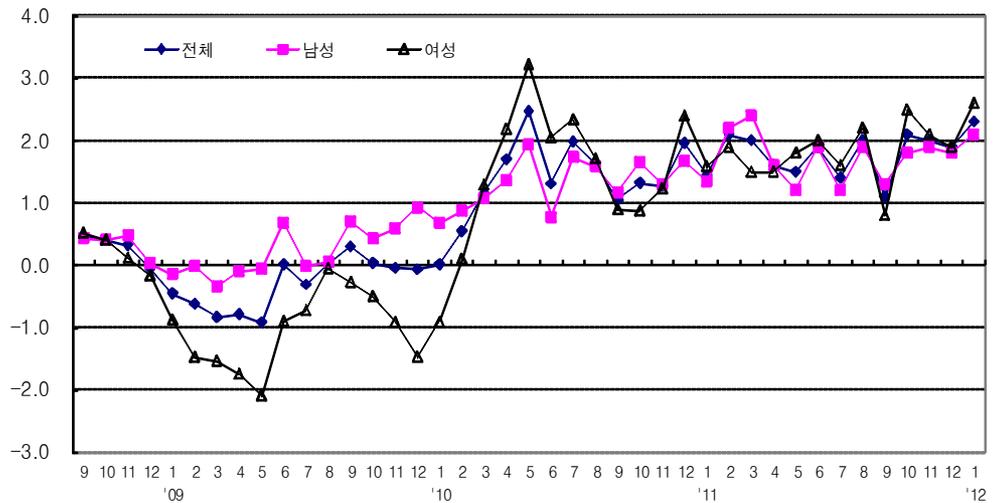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52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천 명(-7.4%), 여성 실업자는 33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천 명(-6.7%)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6%로 전년동월대비 0.3%p, 여성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하였음.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2년 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0.0%)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72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 명(-0.2%)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1,0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천 명(0.2%)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0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 명 감소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2,0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3천 명(7.7%) 증가한 반면,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65천 명으로 47천 명(-1.1%) 감소함.

◆ 제조업 감소 지속,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증가 지속

- 2012년 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2천 명, 3.6%), 전기·운수·통신·금융업(131천 명, 4.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16천 명, 2.1%), 건설업(87천 명, 5.3%), 농림어업(36천 명, 3.5%)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114천 명, -2.8%)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월	2월				12월	1월
전 산업	23,989 (1.5)	23,459 (1.8)	23,196 (1.4)	24,572 (1.7)	24,483 (1.5)	24,462 (2.0)	24,125 (1.9)	23,732 (2.3)	
농림어업	1,544 (-2.2)	1,207 (-2.3)	1,018 (-9.3)	1,736 (0.2)	1,704 (-2.9)	1,521 (-1.5)	1,206 (-2.0)	1,054 (3.5)	
제조업	4,131 (7.0)	4,139 (5.8)	4,148 (5.7)	4,127 (2.8)	4,041 (-0.3)	4,056 (-1.8)	4,071 (-2.1)	4,034 (-2.8)	
건설업	1,761 (3.3)	1,641 (-0.2)	1,632 (0.9)	1,774 (-2.3)	1,755 (-2.0)	1,832 (4.0)	1,832 (6.1)	1,719 (5.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442 (-1.3)	5,471 (-1.1)	5,499 (-1.8)	5,457 (-0.1)	5,496 (1.0)	5,542 (1.8)	5,570 (1.5)	5,615 (2.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234 (1.0)	8,097 (3.0)	8,001 (3.4)	8,529 (2.8)	8,473 (2.8)	8,486 (3.1)	8,415 (2.8)	8,293 (3.6)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55 (1.9)	2,880 (1.6)	2,874 (1.2)	2,933 (3.6)	3,001 (6.6)	3,011 (5.5)	3,017 (5.1)	3,005 (4.6)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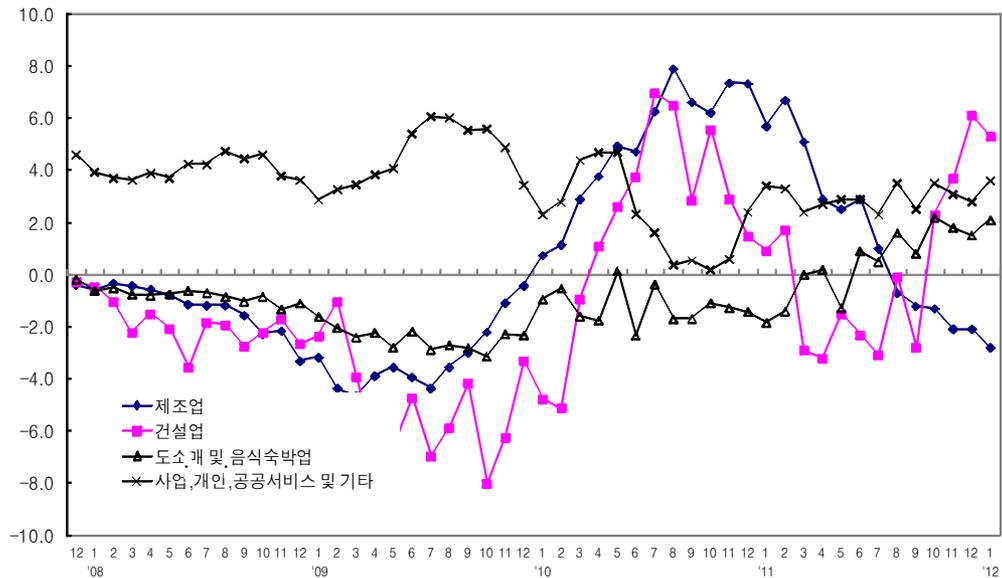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2. 2), 『2012년 1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1년 하반기부터 고용주, 자영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54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3천 명(2.9%)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18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3천 명(2.1%)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769천 명으로 465천 명(4.5%), 임시근로자는 4,868천 명으로 21천 명(0.4%)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547천 명으로 133천 명(-7.9%)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6 우측 참조).
 - 2011년 하반기 이후 고용주, 자영업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6 좌측 참조).
- 2012년 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6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 명(-0.4% 감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74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0천 명(2.5%) 증가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1,030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 명(-20.7%) 감소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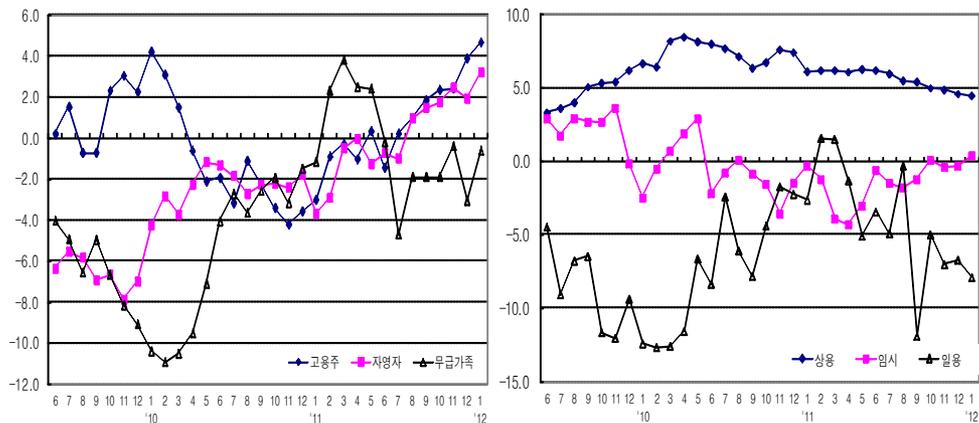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12월				
전 체	23,989 (1.5)	23,459 (1.8)	23,196 (1.4)	24,572 (1.7)	24,483 (1.5)	24,462 (2.0)	24,125 (1.9)	23,732 (2.3)
비임금근로자	6,778 (-2.5)	6,542 (-1.5)	6,365 (-3.1)	7,004 (-0.3)	6,965 (-0.4)	6,878 (1.5)	6,629 (1.5)	6,548 (2.9)
자영업주	5,514 (-2.6)	5,399 (-2.1)	5,283 (-3.5)	5,657 (-0.7)	5,680 (0.6)	5,639 (2.3)	5,520 (2.5)	5,473 (3.6)
무급가족종사자	1,264 (-2.2)	1,143 (1.7)	1,081 (-1.2)	1,348 (1.5)	1,285 (-4.7)	1,239 (-2.0)	1,109 (-3.1)	1,075 (-0.6)
임금근로자	17,211 (3.2)	16,917 (3.2)	16,832 (3.3)	17,568 (2.5)	17,518 (2.3)	17,585 (2.2)	17,496 (2.0)	17,184 (2.1)
상용근로자	10,320 (7.3)	10,413 (6.2)	10,305 (6.1)	10,681 (6.2)	10,731 (5.6)	10,820 (4.8)	10,824 (4.6)	10,769 (4.5)
임시근로자	5,052 (-2.2)	4,804 (-1.8)	4,848 (-0.3)	5,041 (-2.7)	5,072 (-1.5)	5,042 (-0.2)	4,986 (-0.3)	4,868 (0.4)
일용근로자	1,838 (-2.8)	1,701 (0.1)	1,680 (-2.6)	1,846 (-3.3)	1,716 (-5.7)	1,723 (-6.3)	1,686 (-6.7)	1,547 (-7.9)
36시간 미만	3,090 (4.4)	3,246 (-33.1)	3,275 (2.3)	3,210 (0.4)	8,464 (154.2)	3,217 (4.1)	3,250 (-0.8)	3,261 (-0.4)
36시간 이상	20,620 (1.1)	19,739 (11.7)	19,267 (1.2)	21,067 (1.7)	15,419 (-24.3)	20,937 (1.5)	20,570 (2.3)	19,747 (2.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2. 2), 『2012년 1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우) 및 비임금근로자(좌)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전 연령 모두 실업자 증가

- 2012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40대와 60세 이상에서 증가하였음.
 - 2012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8.0%, -0.5%p), 30대(2.8%, -0.8%p), 50대(2.0%, -0.5%p)에서 감소하였고, 40대(2.3%, 0.1%p), 60세 이상(3.3%, 0.0%p)에서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3.5%, -0.3%p), 고졸(4.0%, -0.4%), 대졸 이상(2.9%, -0.3%p) 모두 감소하였음.
- 2012년 1월 중 전체 실업자 853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6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88천 명으로 76천 명 감소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2012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12월				
전 체	808(3.3)	1,028(4.2)	918(3.8)	865(3.4)	786(3.1)	740(2.9)	754(3.0)	853(3.5)
15~29세	297(7.1)	372(8.8)	363(8.5)	332(7.9)	284(6.7)	292(7.1)	321(7.7)	339(8.0)
30~39세	194(3.2)	237(4.0)	214(3.6)	211(3.5)	189(3.2)	171(2.9)	165(2.8)	167(2.8)
40~49세	151(2.2)	167(2.5)	143(2.2)	145(2.1)	138(2.0)	131(1.9)	125(1.9)	156(2.3)
50~59세	114(2.3)	133(2.7)	120(2.5)	107(2.0)	108(2.1)	94(1.8)	94(1.8)	105(2.0)
60세 이상	53(1.9)	119(4.5)	78(3.3)	70(2.3)	67(2.1)	53(1.8)	49(1.8)	86(3.3)
중졸 이하	112(2.2)	195(4.1)	173(3.8)	112(2.1)	119(2.3)	108(2.1)	109(2.3)	160(3.5)
고졸	392(3.9)	465(4.6)	442(4.4)	408(4.0)	372(3.7)	349(3.5)	371(3.7)	406(4.0)
대졸 이상	304(3.1)	369(3.8)	303(3.2)	345(3.4)	296(2.9)	284(2.8)	274(2.7)	288(2.9)
취업무경험 실업자	38	52	54	45	45	44	54	65
취업유경험 실업자	770	977	864	820	741	696	700	788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2. 2), 『2012년 1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1년 11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1.6% 상승
- 2011년 11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18천 원으로 전년동월(2,577천 원)대비 1.6%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3% 상승해 2,354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2.2% 하락하여 179천 원을 기록하였고, 특별급여 증가율은 30.3% 하락하여 243천 원을 기록함.
 - 2011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초과급여와 특별급여 감소의 영향으로 2010년 11월 대비 0.4% 하락한 2,776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2.6% 상승한 1,269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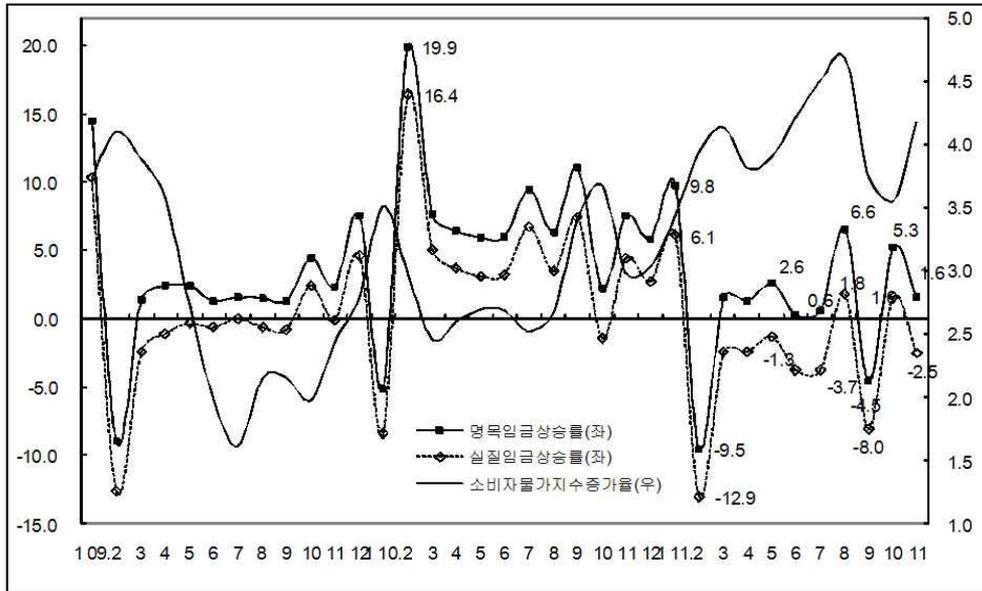
(단위: 천 원, 2010=100.0, %)

	2009	2010	2011								
			상반기	3/4분기	4/4분기	상반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2.6)	2,816 (6.8)	2,744 (6.6)	2,666 (6.2)	2,577 (7.6)	2,766 (0.8)	2,830 (0.2)	2,703 (1.4)	2,923 (0.6)	2,618 (1.6)	
상용 근로자	임금 총액	2,863 (2.2)	3,047 (6.4)	2,966 (6.6)	2,903 (6.3)	2,787 (7.0)	2,930 (-1.2)	2,992 (-1.3)	2,869 (-1.2)	3,109 (-1.1)	2,776 (-0.4)
	정액 급여	2,139 (4.0)	2,234 (4.5)	2,217 (4.5)	2,223 (4.8)	2,235 (4.3)	2,312 (4.3)	2,308 (4.4)	2,316 (4.2)	2,345 (5.0)	2,354 (5.3)
	초과 급여	175 (-2.2)	196 (12.2)	190 (15.3)	198 (13.4)	204 (8.0)	175 (-7.9)	168 (-8.4)	183 (-7.4)	182 (-7.1)	179 (-12.2)
	특별 급여	550 (-2.8)	617 (12.3)	560 (13.1)	483 (10.7)	349 (27.8)	442 (-21.0)	516 (-18.9)	369 (-23.5)	581 (-18.5)	243 (-30.3)
임시·일용근로 자 임금총액	1,073 (1.9)	1,056 (-1.6)	1,057 (-1.0)	1,062 (0.1)	1,036 (-4.9)	1,172 (10.8)	1,149 (9.2)	1,192 (12.3)	1,232 (15.8)	1,269 (22.6)	
소비자물가지수	97.1 (2.8)	100.0 (2.9)	99.3 (2.8)	100.4 (2.9)	100.6 (3.0)	103.2 (3.9)	102.8 (3.8)	103.6 (4.0)	104.7 (4.3)	104.8 (4.2)	
실질임금증가율	-0.1	3.8	3.7	6.0	4.4	-3.0	-3.5	-2.5	-3.5	-2.5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소폭 하락했으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힘입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실질임금은 2.5% 감소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2.5%를 기록함(그림 7 참조).

◆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임금이 증가함

○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은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임금 감소가 가장 높음.

— 2011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5.6%), 건설업(14.8%), 숙박 및 음식점업(13.9%) 순으로 증가함.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	2011			
		상반기	11월	상반기	11월
전 산업	2,816 (6.8)	2,744 (6.6)	2,577 (7.6)	2,766 (0.8)	2,618 (1.6)
광업	3,000 (7.3)	2,933 (6.9)	2,932 (15.6)	3,324 (13.4)	3,224 (9.9)
제조업	2,985 (9.1)	2,854 (8.9)	2,697 (12.5)	2,898 (1.5)	2,675 (-0.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5,281 (8.2)	4,106 (0.9)	5,189 (-1.7)	4,255 (3.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360 (5.3)	2,214 (0.6)	2,391 (1.3)	2,434 (10.0)
건설업	1,944 (7.9)	1,925 (6.9)	1,801 (5.3)	2,175 (13.0)	2,067 (14.8)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701 (6.8)	2,499 (7.4)	2,817 (4.3)	2,678 (7.1)
운수업	2,381 (5.4)	2,307 (5.7)	2,139 (4.8)	2,316 (0.4)	2,292 (7.1)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434 (3.0)	1,427 (9.2)	1,624 (13.2)	1,624 (13.9)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320 (4.7)	3,266 (3.0)	3,670 (10.6)	3,776 (15.6)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759 (7.1)	4,219 (3.4)	4,796 (0.8)	4,348 (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1,983 (6.4)	1,814 (1.5)	1,990 (0.3)	1,967 (8.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782 (6.8)	3,617 (8.1)	3,682 (-2.6)	3,574 (-1.2)
사업서비스업	1,848 (8.2)	1,816 (8.3)	1,725 (5.1)	1,654 (-8.9)	1,669 (-3.2)
교육서비스업	3,157 (1.4)	3,154 (0.4)	2,921 (1.8)	2,978 (-5.6)	2,770 (-5.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553 (2.0)	2,505 (3.4)	2,429 (-4.9)	2,476 (-1.2)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0.9)	2,054 (-0.4)	1,977 (-0.4)	2,078 (1.2)	1,978 (0.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064 (4.6)	1,944 (2.7)	2,147 (4.0)	2,076 (6.8)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반면, 2011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3.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 등 인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남.
- 금융 및 보험업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및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액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299인 규모에서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

○ 2011년 11월 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5~299인에서 상승한 반면,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감소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2011년 11월 기준 2,556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54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2% 감소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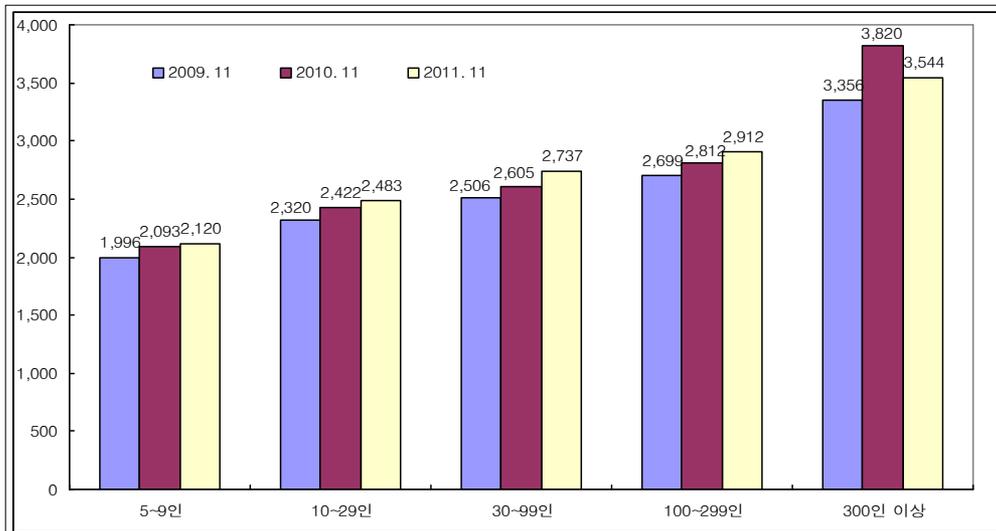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0			2011	
			상반기	11월	상반기	11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 (6.4)	2,966 (6.6)	2,787 (7.0)	2,930 (-1.2)	2,776 (-0.4)
	정액급여	2,234 (4.5)	2,217 (4.5)	2,235 (4.3)	2,312 (4.3)	2,354 (5.3)
	초과급여	196 (12.2)	190 (15.3)	204 (8.0)	175 (-7.9)	179 (-12.2)
	특별급여	617 (12.3)	560 (13.1)	349 (27.8)	442 (-21.0)	243 (-30.3)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 (5.5)	2,639 (5.9)	2,499 (4.5)	2,611 (-1.1)	2,556 (2.3)
	정액급여	2,082 (4.3)	2,065 (4.5)	2,079 (4.0)	2,177 (5.4)	2,220 (6.8)
	초과급여	176 (13.6)	172 (17.6)	180 (8.5)	147 (-14.2)	150 (-17.1)
	특별급여	441 (8.4)	403 (9.1)	239 (6.3)	287 (-28.7)	186 (-22.1)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 (9.1)	4,129 (8.8)	3,820 (13.9)	4,132 (0.1)	3,544 (-7.2)
	정액급여	2,779 (5.2)	2,756 (4.8)	2,791 (5.5)	2,823 (2.4)	2,821 (1.1)
	초과급여	268 (9.6)	257 (10.7)	288 (7.5)	282 (9.7)	282 (-2.1)
	특별급여	1,245 (18.7)	1,115 (19.6)	742 (67.8)	1,027 (-7.9)	441 (-40.5)

주: 1)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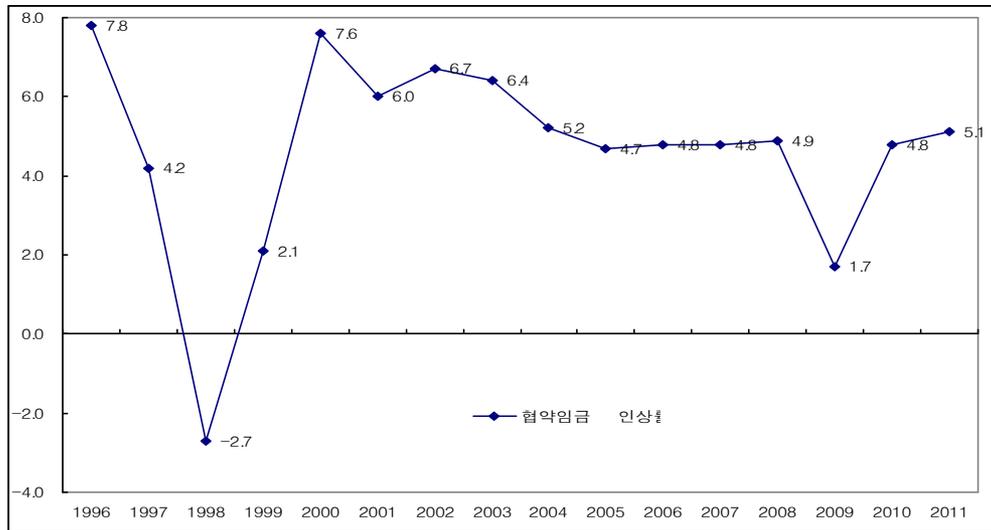
◆ 2011년 협약임금 인상률 5.1%

○ 2011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를 기록함.

- 2011년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2010년도 인상률(4.8%)에 비해 0.3%p 상승함.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일반적으로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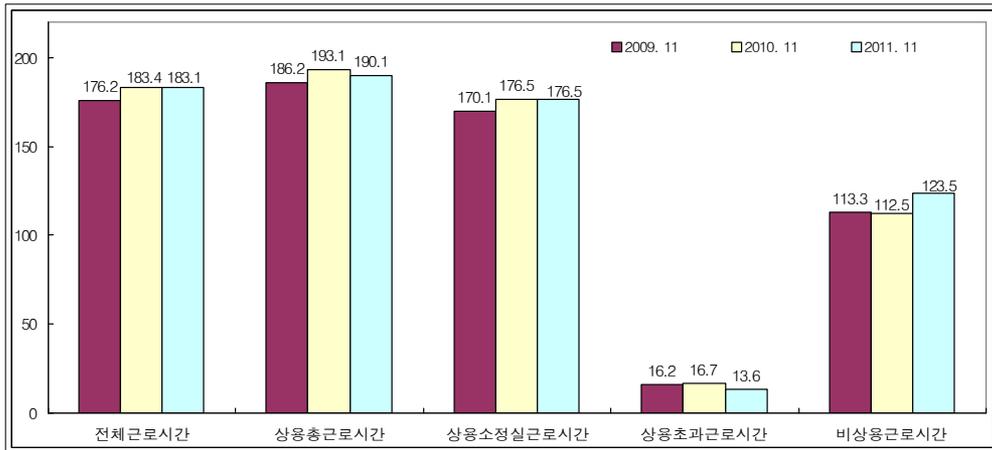
◆ 2011년 11월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2011년 11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함.

- 2011년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83.1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83.4시간)에 비해 0.3시간(0.2)%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전년동월(193.1시간)대비 1.6%, 초과 근로시간은 13.6시간으로 전년동월(16.7시간)대비 18.6% 감소한 반면, 소정 실근로시간은 176.5시간으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함(그림 9 참조).
- 한편, 임시·일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3.5시간으로 전년동월(112.5시간)대비 11시간(9.8%) 증가함.

[그림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의 근로시간 상승률이 가장 높음

○ 숙박 및 음식점업과 건설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09	2010	2011			
			상반기	11월	상반기	11월
전 산업	176.1(-0.3)	176.7(0.3)	175.1(0.6)	183.4(4.1)	175.1(0.0)	183.1(-0.2)
광업	187.6(4.0)	188.1(0.3)	185.2(-0.8)	197.3(6.0)	185.5(0.2)	191.0(-3.2)
제조업	188.5(-0.8)	192.1(1.9)	190.5(3.4)	201.9(4.6)	189.9(-0.3)	198.1(-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7.9(2.5)	176.9(-0.6)	174.9(0.2)	182.5(3.3)	175.2(0.2)	186.8(2.4)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	194.0(0.3)	192.9(-0.6)	191.2(-0.1)	195.4(1.0)	184.7(-3.4)	192.0(-1.7)
건설업	147.2(-5.5)	146.1(-0.7)	146.9(-2.1)	144.9(4.6)	154.2(5.0)	155.0(7.0)
도매 및 소매업	179.0(0.2)	177.2(-1.0)	175.8(-0.8)	182.2(2.5)	173.7(-1.2)	183.3(0.6)
운수업	184.4(8.0)	184.6(0.1)	183.0(0.9)	187.2(1.1)	178.0(-2.7)	188.9(0.9)
숙박 및 음식점업	164.3(-3.5)	163.7(-0.4)	161.2(-1.8)	168.5(4.7)	186.3(15.6)	186.7(10.8)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	166.8(0.4)	166.2(-0.4)	164.8(0.6)	173.3(2.8)	162.9(-1.2)	174.2(0.5)
금융 및 보험업	166.8(0.5)	165.3(-0.9)	163.5(-1.4)	172.5(4.7)	161.2(-1.4)	173.7(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2.0(-1.2)	200.4(-0.8)	199.2(-1.0)	203.8(2.1)	193.2(-3.0)	200.0(-1.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7.7(0.1)	166.3(-0.8)	164.5(-0.5)	176.9(4.1)	164.2(-0.2)	176.5(-0.2)
사업서비스업	179.0(-1.3)	180.1(0.6)	176.9(-0.6)	188.5(5.7)	168.7(-4.6)	183.1(-2.9)
교육서비스업	153.7(1.9)	149.9(-2.5)	147.7(-3.2)	158.9(4.7)	150.3(1.8)	159.4(0.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4(0.2)	176.5(0.1)	174.4(0.2)	183.4(3.7)	171.5(-1.7)	182.7(-0.4)
여가관련서비스업	161.6(1.6)	158.7(-1.8)	157.6(-2.1)	163.2(1.2)	155.4(-1.4)	161.2(-1.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	175.5(-0.2)	173.9(-0.9)	172.7(0.1)	178.0(1.7)	174.0(0.8)	177.9(-0.1)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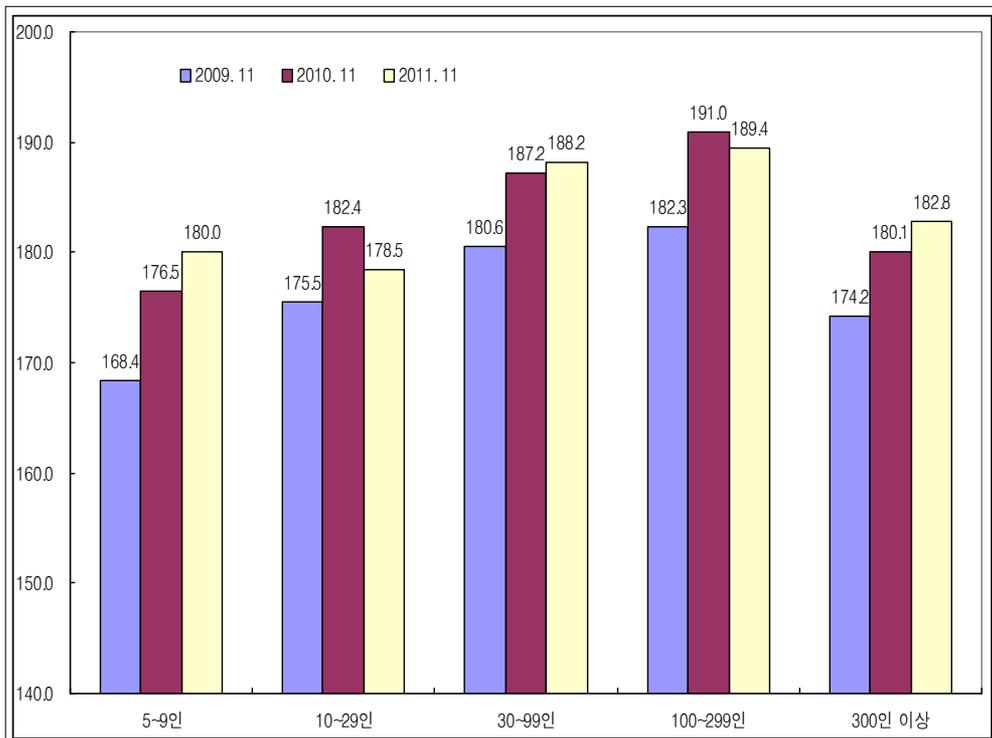
- 2011년 11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사업서비스업(183.1시간, -2.9%), 제조업(198.1시간, -1.9%), 부동산 및 임대업(200.0시간, -1.9%)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186.7시간, 10.8%), 건설업(155.0시간, 7.0%)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1년 11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200.0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55.0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5~299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1년 11월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3.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182.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함.

〔그림 11〕 사업체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세부 규모를 나누어 살펴보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0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2.0%,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8.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함.
- 반면,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1%,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9.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함.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2011년 연간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1년 연간 전국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6.3%), 사업소득(4.5%), 이전소득(9.0%)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5.8%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증가율은 1.7%에 그침.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근로·사업·이전소득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6.0% 증가하였으며, 비경상소득은 3.0% 감소하였음.
 - 소비지출은 교통(8.7%), 식료품·비주류음료(7.1%), 의류·신발(7.4%)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4.6% 증가하였고, 교육지출은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실질로는 0.6% 증가).
 - 비소비지출의 경우, 공적비소비지출(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과 사적비소비지출(이자비용, 가구간이전지출)이 모두 증가해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음.
 - 2011년 연간 전국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11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음.
- 2011년 4/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상소득(7.7%) 증가하였으나 비경상소득은 6.5% 감소하였음. 소비지출은 음식·숙박(6.4%), 의류·신발(6.0%)이 증가한 반면, 가정용품, 오락·문화, 교통 등은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3.1% 증가에 그쳤으며, 실질로는 0.8% 감소하였음.

〈표 10〉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2010				2011					
	4/4분기		연간		3/4분기		4/4분기		연간	
	금액	증감률								
소득	3,620.4	2.4	3,631.7	5.8	3,897.6	6.5	3,883.4	7.3	3,841.6	5.8
경상소득	3,498.7	3.2	3,491.1	6.0	3,784.7	6.3	3,769.6	7.7	3,705.3	6.1
근로소득	2,351.5	2.7	2,348.6	5.0	2,573.6	6.2	2,533.3	7.7	2,495.6	6.3
사업소득	818.0	2.5	804.8	7.7	846.4	4.9	869.0	6.2	841.1	4.5
재산소득	15.4	34.6	14.5	-2.2	14.8	20.8	15.4	0.0	16.3	12.3
이전소득	313.8	8.3	323.3	9.8	349.9	10.7	351.9	12.1	352.3	9.0
비경상소득	121.6	-17.2	140.6	1.8	112.9	11.7	113.8	-6.5	136.3	-3.0
소비지출	2,308.4	4.2	2,286.9	6.4	2,443.6	5.8	2,379.6	3.1	2,392.7	4.6
비소비지출	654.0	1.3	674.0	7.6	746.3	7.4	703.3	7.5	722.3	7.2
처분가능소득	2,966.4	2.6	2,957.7	5.4	3,151.3	6.3	3,180.1	7.2	3,119.3	5.5
흑자액	658.0	-2.5	670.8	2.2	707.7	7.7	800.5	21.7	726.6	8.3
흑자율	22.2	-1.2p	22.7	-0.7p	22.5	0.3p	25.2	3.0p	23.3	0.6p
평균소비성향	77.8	1.2p	77.3	0.7p	77.5	-0.3p	74.8	-3.0p	76.7	-0.6p

주: 1)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2)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3)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통계청(2012.2), 『2011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표 11〉 소득분배 동향

(단위: 배, %, %p)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가구 (1인 이상 농가포함)	지니계수	시장소득	-	-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가처분소득	-	-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개선효과	-	-	0.024	0.028	0.030	0.031	0.031	0.031
	소득5분위 배율	시장소득	-	-	6.65	7.09	7.38	7.70	7.74	7.86
		가처분소득	-	-	5.38	5.60	5.71	5.75	5.66	5.73
		개선효과	-	-	1.27	1.49	1.67	1.95	2.08	2.13
	상대빈곤율	시장소득	-	-	16.6	17.3	17.5	18.1	18.0	18.3
		가처분소득	-	-	14.3	14.8	15.2	15.3	14.9	15.2
		개선효과	-	-	2.3	2.5	2.3	2.8	3.1	3.1
전국가구 (2인 이상 비농가)	지니계수	시장소득	0.301	0.306	0.312	0.321	0.323	0.320	0.314	0.313
		가처분소득	0.283	0.287	0.291	0.295	0.296	0.294	0.288	0.288
		개선효과	0.018	0.019	0.021	0.026	0.027	0.026	0.026	0.025
	소득5분위 배율	시장소득	5.27	5.53	5.74	6.05	6.16	6.14	6.03	6.00
		가처분소득	4.61	4.75	4.83	4.95	4.98	4.95	4.81	4.80
		개선효과	0.66	0.78	0.91	1.10	1.18	1.19	1.22	1.20
	상대빈곤율	시장소득	13.8	14.7	14.8	15.5	15.0	15.4	14.9	14.9
		가처분소득	12.1	12.9	12.6	12.9	12.9	13.0	12.5	12.3
		개선효과	1.7	1.8	2.2	2.6	2.1	2.4	2.4	2.6

주: 1)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

개선효과=시장소득 기준-가처분소득 기준

2) 소득 5분위배율=상위 20%의 소득(5분위)/하위 20%의 소득(1분위)

3)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2012.2), 『2011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 2011년 1인 이상 전국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11으로 전년 0.310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높아졌으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는 0.28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 2011년 1인 이상 전국가구의 시장소득 5분위배율은 7.86배로 2010년 7.74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도 5.73배로 전년 5.66배에 비해 0.07배p 상승하였음.
 - 2011년 1인 이상 전국가구의 가처분소득 상대빈곤율은 15.2%로 전년 14.9%에 비해 0.3% 상승하였음.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2월 23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7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2년 2월 15일 기준)는 29,103일로 집계됨.

〈표 12〉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1. 1. 1~2. 23	전년 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7	1	-
종 결	4	0	-
진 행	3 (6)	1 (9)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29,103	50,343	△42.2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2월 15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부산일보

- 지난 달에 이어 노조는 사장퇴진·지부장 징계철회·정수재단 사회환원 등을 요

구하며 회사 1층 로비에서 신입사장 출근저지 및 출근선전전을 실시 중임.

- 2월 10일, 부산지방법원은 사측이 편집국장(12월 1일부터 대기발령)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1)

■ 유성기업

- 1월 27일, 유성기업(주) 노조는 사측에 2012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함. 이미 금속노조는 사측에 1월 20일경 2012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요구한 상태이며, 사측은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주) 노조를 교섭요구노조로 확정 공고함.
- 한편,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는 지난 1월에 ‘2011년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기본급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노조는 수당인상 요구를 철회함).
- 2월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 회의를 개최함.2) 이날 대전고등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조합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개최하여 이 중 2명은 징역 3년 실형,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함.
- 2월 16일까지는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주) 노조간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간 임.3) 2월 9일, 유성기업 지회와 사측은 아산공장에서 8차 임금교섭을 실시함.
- 2월 15일, 유성기업 지회노조와 사측은 10차 임금교섭을 실시하였음. 이날 사측은 유성기업(주) 노조와 체결한 임금과 동일한 기본급 일급 1,500원(2.7%)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는 수용을 거부함.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4)

【노<사> 쟁점】

▲기본급 150,611원(일급 5,020원) 정액 인상 <일급 1,500원>

- 2월 17일, 사측은 2012년 단협 갱신 관련 유성기업(주)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공고함. 이에 대하여 유성기업 지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검토 중에 있음.

1) 법원의 기각이유는 편집국장 이○○에 대한 징계처분(대기발령)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효력이 없다는 것임.
 2) 올해 1월 금속노조가 유성기업을 상대로 금속노조 탈퇴(신노조 가입)권유 금지, 잔업·특근 배제를 통한 불이익조치 금지, 징계 차별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임.
 3) 공동교섭 대표단은 먼저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다.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이 정한 기한, 즉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할 수 있을 뿐, 위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위와 같은 동의를 할 수는 없다(대구지방법원 2011. 6. 29. 2010구합3420).
 4) 2월 15일, 유성기업(주) 노조와 합의한 임금협약은 기본급 일급 1,500원 인상(2.7%), 연말 특별생산기여금 통상임금 120% 지급(특별생산기여금은 1인당 평균 약 320만 원으로 2011년 12월 30일 현금으로 기 지급함) 등임.

- 한편, 2월 20일에는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회의 결과가 통지됨. 101명에 대하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함.
- 2월 21일, 유성기업 지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 한편, 이날 대전지검천안지청은 천안고용지청에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불응 고소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하였음. 9명은 약식기소, 20명 기소유예 처분을 함(2011년 6월 노조가 천안고용지청의 건물로비를 점거한 것에 대해 천안고용지청이 유성기업 지회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임).

■ KEC

- 1월 31일, 사측은 3차 희망퇴직을 접수하였고, 1노조 조합원 4명, 2노조 조합원 9명, 비노조원 2명 등 1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함. 2월 현재까지 사측은 229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할 계획이나 희망퇴직 신청자는 60명에 그침(1차 30명, 2차 15명, 3차 15명). 사측은 1월 13일에 166명에게 통보한 정리해고를 2월 14일에 발효할 예정임.
- 2월 7일, 2노조와 사측은 노사협의를 개최하여 ‘경영위기 극복 및 해고회피를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함. 이 합의서에는 2월 14일자 해고와 관련하여 1노조가 2노조와 동일내용 합의 시 해고예고를 전부 철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방의 합의서 적용으로 달성되는 비용절감 효과에 상응한 인원수 만큼 해고를 철회하기로 함.5)
- 이어 임단협도 잠정합의하였으나 내용은 비공개임. 다만 위 합의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짐.
- 2월 10일, 노사(1노조)는 임단협 본교섭을 실시하여 2노조와 합의한 내용을 임단협 수정안으로 제시함. 이에 노조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임. 한편, 이날 사측은 최종 해고대상자 수를 75명(당초 166명)으로 조정하여 해고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하기로 함.
- 2월 13일, 사측은 해고회피를 위한 최종 희망퇴직기간 및 협상기간 설정을 공고함. 주요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고 회피를 위해 KEC지회와 마지막으로 협의하기 위한 희망퇴직기간과 협상기간을 설정함 ▲2월 14일부 해고는 최종협상 종료일인 2월 23일(목)까지 유보하고, 최종협상 결정 시 2월 24일부로 해고 시행 ▲희망퇴직 신청기간: 2.14~2.21, 신청대상자: 해고대상

5) 그 외에도 J1, J2 등급의 최저임금 이상, S4, S5 등급의 고정O/T 폐지 및 실제O/T 시간 적용, 상여금 통상임금 300% 삭감, 근무형태: 3조 3교대를 2조 2교대로 전환, 교대수당 폐지, 2012. 7월 이내 합의서 시행, 시행 후 3년간 조합원 고용보장 등이 주요 내용임.

자(75명) → 2월 22일 희망퇴직자 개별통보 ▲최종 협의기간: 2.14~2.23 ▲위로금: (25년 미만) '근속연수에 비례한 월수-2개월'분의 통상임금, (25년 이상) 23개월분 통상임금, 학자금: 2012년 12월까지 현행기준 적용 등

- 2월 17일, 1노조와 사측의 임단협 본교섭은 진전 없이 종료됨. 한편 노조는 회사가 구미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하나로 공장유휴부지 개발계획(약 2,900억 원 규모)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사측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함.6)
- 한편, 1노조는 지회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손실 부풀리기를 통한 회계조작으로 298억 원을 지주회사인 한국전자홀딩스에 빼돌렸다고 하며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힘.
- 2월 21일, 정리해고 대상자 75명에 대한 희망퇴직 접수를 마감함.
- 2월 23일, 1노조와 사측은 교섭을 실시했으나 진전없이 종료됨.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 후 회사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사측은 우선 협상에 임하여 2월 10일 사측 제시안(2월 7일자 2노조의 합의안과 동일)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요구함. 한편, 이날 사측과 지부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통해 해고통보 이후라도 2월 29일까지 교섭을 통해 합의되면 해고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함. 이날 사측은 고객상담실에서 해고통지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해고대상자들에게 전송함.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 2011년 1월부터 노조는 간헐적으로 파업과 조업을 이어가다가, 올해 사측은 이에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으나 지난 1월 31일 SK 현장 노사는 노사합의에 도달함.7)
-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설 유급 1공수+ 성과급 4.5공수를 2월 29일에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고,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H-프로젝트 공사 종료 시까지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집회를 중단하기로 함. 이에 4개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함.

6) 노조가 사업계획서를 요구한 이유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공장부지를 개발하겠다는 회사가 100억 원이 없어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주장임. 이에 사측은 개발자금은 여유자금이라 아니라 투자자 유치를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주장함. 이에 공장유휴부지 개발계획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중이라며 공개를 거부함.

7) 노사 주요쟁점은 직장폐쇄기간 유급인정을 두고, 노조는 5.5공수를 인정해달라고 하였고, 사측은 4공수만 인정한다고 함. 공수는 작업 대비 노동시간(人時, man-hour) 또는 노동일(人日, man-day)로 단위로 계산됨.

○ 주요 분규사업장 등

■ MBC

- 1월 27일,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는 편파방송 등에 따른 사장 퇴진, 보도 본부장·국장 등 교체 등을 요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함(재적대비 52.8% 찬성).⁸⁾
- 이날 총파업 특보 1호를 통해 총파업 지침 1호를 시달함. 이에 사측은 이번 파업이 인사권과 관련한 파업으로 불법파업이라며 무노동·무임금 등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임.
- 1월 25일부터 기자회견은 제작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1월 30일에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는 파업에 돌입함(573명 참가).
- 2월 3일, 노조는 ‘공영방송 MBC사망 노제’를 개최함. 노조는 총파업 특보(제6호)를 통해 교수노조 등의 파업지지 성명 등을 소개하며 파업지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밝힘.
- 2월 6일, 사측은 조선·동아·중앙 등 10개 일간지에 “MBC노조의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문화방송 시청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게재함. 다음 날인 7일 언론노조는 ‘공정방송복원, 낙하산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을 위한 방송3사(MBC, KBS, YTN) 공동투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함. 김재철 사장은 2월 1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2월 10일, 사측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십시오(불법파업 조합원의 업무복귀 촉구)’라는 특보를 발표하였으나, 이에 노조는 ‘즉각 회사를 떠나십시오’라는 노조 특보로 응수함. 2월 14일에는 사측이 노조가 제작하고 있는 ‘제대로 뉴스데스크’ 제작팀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노조는 ‘제대로 뉴스데스크’는 노조 차원에서 제작한 것이므로 경위서 제출 요구에 개별 조합원이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함.
- 2월 15일, 사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노조와 그 간부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음.⁹⁾
- 2월 17일, MBC 기자회견과 영상기자회는 사측의 2월 16일자 보직간부 4명의 인사 조치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함. 이날 사측은 2월 16일자 보직사임 의사를 표명한 보직간부 4명 중 3명의 의사를 수리함.
- 2월 19일,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김재철 사장을 찾는다는 전단지 배포’를 이유로

8) 투표현황: 서울지부 총원 1,010명 중 783명 투표 → 533명 찬성(52.8%)(노조주장 찬성률 69.4%는 투표자 대비임)

9) 신청내용: ▲불법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 시위, 임직원 출근저지 등 행위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노조는 3,000만 원, 조합원은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임.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다고 밝힘. 입사 20년 이상 간부 135명(보직자 제외)은 기명으로 “김재철 사장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함.

- 2월 22일, 사측은 방문진 이사진에게 업무보고를 함. 이날 이사 9명 중 야당 추천 이사 3명은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날 사측은 전영배 현 보도본부장의 보직을 회수(특임이사로 내정)하고, 권재홍 앵커(9시 뉴스데스크)를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함.
- 2월 23일, 뉴스 앵커 2명(최일구·김세용 부국장)은 사측에 보직사퇴를 선언하고 노조 가입절차를 진행 중임(2월 24일부터 파업 동참 예상).

■ KBS

- 1월 30일, 사측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2010년 불법파업(7.1~7.29) 주도 등을 이유로 엄경철 본부장 등 13명에 대한 징계결과를 통보함. 의결 내용은 정직 8명(1월~6월(엄경철 6월)), 감봉 5명(2월~6월) 등임. 노조는 이번 징계에 대하여 반발하며 대응방안(구제신청, 소송, 피케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KBS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는 1월 12일~1월 18일, 취임 후 1년이 경과한 본부장 2명(고대영 보도본부장·박갑진 시청자본부장)에 대한 불신임을 가결함(고대영 보도본부장: 재적대비 70.7% 찬성, 박갑진 시청자본부장: 재적대비 54.5% 찬성).
- 2월 1일, 사측은 고대영 보도본부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이화섭 부산총국장을 보도본부장으로 발령함.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소속 해고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계약갱신거절 무효(해고 무효), 임금상당액 지급)¹⁰⁾
- 2월 14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파업찬반투표 실시와 투표일정을 확정하고, 가결 시 파업시기는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함. 이날 KBS 기자협회 비대위는 보도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2월 23일부터 제작거부를 돌입하기로 결정함. 한편 PD협회는 2월 16일 제작거부를 결정함(단, 시기와 방법 추후 결정하기로 함).

【투표일정】

▲ 2. 17(금)~2. 20(월) 부재자 투표 ▲ 2. 21(화)~2. 23(목) 본투표

- 2월 17일, KBS 기자협회는 ‘징계철회 및 이화섭 보도본부장 임명 철회’를 위한 제

10) 2009년 6월, 사측 경영개혁단이 KBS 연봉계약직 420명에 대한 정리계획을 발표한 후, 같은 달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가 설립됨. 10월경 사측은 계약직 113명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자 42명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작거부 찬반투표(2.15~2.16) 결과를 공개함.

【투표결과】

재적 541명, 투표 364명(투표율 67.3%) → 찬성 263명(투표자 대비 72.3%, 재적대비 48.6%), 반대 97명

- 2월 18일, 사측은 KBS노조(위원장 최재훈)의 2011년 파업(12. 19~12. 22) 중 불법 행위(근무의사를 밝힌 조합원인 아나운서의 뉴스참여 방해 등) 관련으로 위원장 등 간부 10명에 대한 징계위 개최 및 결과를 통보함(정직 8명(1월~6월, 최재훈 6월), 감봉 2명(1월)).
- 2월 20일, KBS노조는 긴급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2월 22일까지 철야농성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본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이날 언론노조 KBS 본부(본부장 김현석)는 징계철회 등을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함(파업시기는 집행부에 일임, 2.17~2.20 부재자투표; 2.21~2.23 본투표). 또한 KBS본부(피징계자 13명)는 서울남부지법에 ‘정직처분등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
- 2월 23일, 기자회견 비대위는 징계철회 등을 위한 제작거부 방법·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 YTN

- 2월 8일 이후로 노사는 교섭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2월 14일경,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함.
- 노사간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음.

【주요 쟁점 노<사>】

- ▲ 단협: 종전 '08년 단협 조항 복원(파업시 참가자 범위, 인사권 관련 조항 등)<현행 단협 유지('10년 단협내용)
- ▲ 임협: '11년도 약 100억 원 흑자, 기본급 대비 11% 인상<기본급 대비 2% 인상>

■ 아워홈 (한일병원 식당용역업체)

- 아워홈(종업원 9,300여 명) 소속 한일병원 현장 근무자는 19명임. 이들 전원은 민주노총 서울이반노조 한일병원 분회 소속 조합원임(제1노조). 제2노조는 아워홈 노조로 상급단체에 미가입하였고 2011년 7월 설립된 신생노조임. 제1노조도 2011년 7월 설립됨.11)
- 2011년 7월, 제1노조가 설립되고 사측에 교섭을 요구한 이후, 제2노조가 설립되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진행됨. 교섭대표 노조는 제2노조로 확정됨. 2012년 1월 1

11) 한일병원의 식당업무는 직영으로 운영되다 1999년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운영됨. 아워홈은 2007년부터 용역계약을 맺어 한일병원의 단체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제1노조에 따르면 아워홈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일부터 한일병원 식당용역업체가 아워홈에서 씨제이푸드로 변경되면서 노사관계 갈등이 시작됨. 지난 1월 31일, 제1노조는 한일병원(서울 도봉구 소재) 정문 앞에서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 그러나 아워홈 사측은 용역계약 만료(2011.12.31)에 따라 한일병원 근무자들을 인근 지역에 전보발령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퇴사 처리하였기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임.

■ 온리원

- 온리원은 전주대 청소용역을 담당하던 업체임. 2011년 9월 노사는 계약만료 2명에 대해 신규입사 형식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함. 그러나 2012년 1월 노조는 성실교섭, 용역업체 공개경쟁입찰 등을 요구하며 재파업에 돌입함.
- 1월 28일, 노조는 재파업을 종료하고 1월 30일자로 업무복귀를 결정함. 복귀한 이유는 전주대가 경비청소용역업체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온리원은 2012년 2월 29일자로 용역계약이 만료됨.

■ 철도노조

- 2월 4일, 철도노조는 서울역 광장에서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 철도노동자 제1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 2월 6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허준영 사장 후임인 정창영 사장에 대한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철도노조는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정창영 내정자는 KTX 민영화 및 철도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와 함께 공개질의서를 전달함.
- 2월 22일에는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철회를 촉구하는 간부결의대회를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 광장에서 개최함.

■ 전국공공연구노조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 2011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같은 달 21일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함. 이에 노조는 1월 15일, ‘줄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개정 법률안 반대 의견문’을 전달한 바 있음.
-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줄속개편 및 통폐합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2월 1일 ‘과학기술연구위원회의 줄속적인 정부출

연연구기관 개편과 통폐합 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노조는 '국과위 출범 이후 부처 이기주의로 27개 출연연 중 18개 기관만 국과위로 이관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과학기술의 통합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함.
- 2월 8일, 양 노조는 출연연 개편 및 통폐합 지지를 위해 대전지역 연구단지 종사자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함.

■ 화물연대

- 2월 13일, 화물연대는 운송료 현실화, 표준운임제·노동기본권 쟁취, 법제도 개선을 위해 2월 4일부터 12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함(총파업 시기와 방식은 투쟁본부에 위임).
- 총파업 찬반투표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총투표권자 10,590명, 투표자 수 6,012명, 투표율 56.7%
 - ▲ 찬성 4,848명, 반대 1,142명, 무효 22명, 찬성률 80.6%
 - ※ 재적(총 투표권자) 대비 찬성률은 45.8%(4,848/10,590)
- 2월 15일, 화물연대는 '대정부·대정당 법제도 개선요구 설명 및 향후 투쟁계획과 주요 일정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2월 16일, 화물연대는 △운송료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 즉각 법제화¹²⁾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과 반값 기름값, 도로비 실현 △화물차량 1만 5천 대 증차시도 중단 △재산권 보장과 노예, 불평등 계약 근절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면 재개정 등의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현대자동차 지부

- 1월 30일, 노조는 '현대자동차지부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몽구 회장과 의 핵심현안에 대한 대화에 대해 92%의 압도적인 지지, 주간연속 2교대제¹³⁾와 월급제 실시를 2012년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기, 장시간 노동¹⁴⁾과 왜곡된 임금체계 개선(월급제로 전면 전환) 요구, 현대차지부와 기아

12) 2006년 국회 건교위 의원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표준운임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음. 현 정부 들어서도 표준운임제를 2009년까지 법제화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담보상태임.

13) 지부의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음.

- ①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생산량 증가분(30만 대 증산분량)을 감당하기 위해 연산 30만 대의 생산설비 투자계획, 완성차 공장 신설, 파워트레인부분 증설을 요구함.
- ② 신규인력은 파워트레인 부분에 최소 1,000명, 완성차라인 신설가동을 위해 최소 2,500명 등 총 3,500명 이상이 충원되어야 함.
- ③ '표준맨아워(현장맨아워) 설정문제'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분리하여 추후 논의하고자 함.

차지부의 공동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 및 찬성과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동참의지 표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해결에 현대자동차지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84%에 이른다는 사실, 현대차의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에 대한 압도적 동의, 총선과 대선에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겠다는 의사 표현' 등임.

- 2월 7일, 노조는 분신으로 사망한 조합원 故 신○○에 대한 장례식(현대차지부 노동조합장)을 진행함.
- 2월 5일, 노조와 유족측이 만나, 장례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유족들은 보상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여 2월 8일 사측과 보상 관련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임.
- 2월 23일, 대법원(특별1부)은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 최○○ 조합원이 제기한 부해·부노구제신청 관련 재상고사건에 대해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함. 한편, 이날 현대차 외부협력업체 직원1명이 현대차 울산1공장프레스1부 생산라인에서 압착사고로 사망함.

■ 울산항운노조

- 울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임. 울산신항 남항 9번 선석부두는 국내 유일의 100% 민자부두로서 올해 1월 13일에 개장함. 현재 노조는 울산신항 노무공급 방식을 두고 부두 운영사인 태영GLS와 갈등을 겪고 있음.
- 2011년 11월부터 노사, 울산항만청, 울산항만공사 등 4자는 노무공급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노사간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음.

노조안			사측안	
	1안	2안		원안 및 수정안
1월 10일	기존도급제 (타 항만하역임금협약서 준용)	66명 상용화(1인당 통상임금 약 600만 원), (기타)협상기간 중 기존도급제 운영	1월 10일	조합원 상용화 10명, 협상기간 중 필요인력 요청
1월 13일	기존도급제	100여명 상용화(1인당 통상임금 약 600만 원), (기타) 협상기간 중 기존도급제 운영	1월 13일	조합원 상용화 10명(급여는 회사 과장급 기준(연봉 3,500만 원~4,100만 원)), 협상기간 중 필요인력 요청
1월 19일	(2안)을 철회하고 (1안)과 (3안) 고수		1월 19일	상동

14) 지부의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음.

- 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1항에 대한 새로운 행정해석을 즉각 단행해야 함.
- ② 정부는 안정된 임금구조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법제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함.
- ③ 정부는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하청 납품단가 강제인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납품단가 원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함.

- 2월 1일, 4자 협의에서 울산항만청이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측이 중량물운반 작업 인원투입에 대해 거부하여 결렬됨.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기존도급제에 따라 항만하역요금표를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 대비 하역인건비가 40~50% 정도로 연간 22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2월 2일, 사측은 현대중공업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블럭 5천 톤의 선적작업을 시도하던 중 조합원 200여 명이 이를 방해하려 하자, 용역경비 100여 명을 동원하여 부두 출입문 앞에서 조합원들과 대치함. 이후 사측은 물량을 선적하여 출항함.
 - 2월 6일, 노조간부 13명과 울산해양항만청장이 면담을 통해 태영측과 협상 중재를 요청함. 2월 7일에는 투자사인 이영산업기계가 조합원들의 지지 없이 선박블럭 반출하였고, 2월 8일에는 노사가 사내창고에 보관중인 화물의 반출 관련 협상을 하였으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월 9일에는 사내 보관중인 화물 반출 관련 협상이 다시 노사간 이견으로 중단되었고, 울주경찰서는 울산항운노조에 2월 10일까지 한국제지(주) 화물의 반출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함. 2월 10일에 노사는 사내 보관중인 화물(한국제지) 반출 관련 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화물반출 개시함.
 - 2월 13일, 노조는 한진부두 앞에서 성실교섭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고, 조합원 30여 명은 회사정문 옆 천막 2동에서 화물반출 감시활동 계속 중임.
 - 2월 22일에는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2월 21일에는 노사가 협상을 재개하였고, 노조가 사측 협상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사측에 제시함. 2월 22일 노조·울산해양항만청·울산항만물류협회가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짐.
 - 2월 22일,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959명 중 95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99.3%), 반대 3명으로 파업을 가결함. 이날 4자 협의(노조·울산항만공사·울산해양항만청·울산항만물류협회)에서 노조는 하역작업이 차질이 없도록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 한진중공업
- 1월 31일, 2노조(한진중공업노동조합)는 30명의 1노조(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탈퇴서를 받아 이를 1노조에 제출함. 1월 20일에도 2노조는 487명(2노조 설립 당시 1노조에 이중가입되어 있던 17명 포함)의 1노조 탈퇴서를 1노조에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1노조는 탈퇴서에 사면과 소속부서 기재가 누락되는 등 탈퇴서의 진의가 의심되고, 규정상 지회장·지부장·위원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 2월 1일, 1노조와 사측은 사내 회의실에서 3차 임단협 본교섭을 개최함.

- 2월 7일, 1노조와 사측은 사내회의실에서 4차 임단협 본교섭을 개최함. 사측은 최종안을 제시하고 차기교섭(2월 9일)에서 노조의 의견제시 요구하였으나 노조는 사측의 교섭진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라며 사측안 철회를 요구함.

【사측안】 ▲임금: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격려금 없음 ▲단협개정: 기존 8개항 일부수정 ▲타임오프: 임단협 해결 후 신설노조와 함께 논의 ▲기타: 경영정상화 시 까지 무파업 선언

*8개항: 징계, 해고, 상여금, 휴일, 휴가, 재해보상, 의료비지원, 생산직 승격최장연한제도 폐지(기존 제시 8개항 중 조합원자격 조항을 철회하고 승격최장연한제도 폐지 추가)

- 2월 7일, 현재 조합원 수는 1노조 184명(해고자 94명 제외 시), 2노조 524명으로 파악됨.

- 2월 14일,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한 의견제시 없이 별도 노조안을 사측에 전달함. 사측은 노조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노조 요구안】 ▲단협: 유효기간을 '12.3.31로 함 ▲임금: 기본급 9만 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인상 ▲별도요구: ① 총 고용보장 ② 임단협 합의타결금 지급(5백만 원) ③ 생계위로금 지급(통상임금의 400%) ④ 정리해고 관련 노조·상급단체·개인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손해 가압류 취하 ⑤ 중앙·지부집단교섭 인정

- 2월 21일, 노사(1노조)는 임단협 6차 본교섭(이재용 사장은 개인일정으로 불참)을 개최함. 노조는 사측안 철회 및 노조안 수용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거부함. 한편, 사측은 생산직 64명에 대해 3월 1일(목)자 휴업발령을 할 예정(설계·관리직 추가 포함 여부 검토 중)임.

- 2월 23일, 사측은 1노조에 단체협약 해지(해지일자: 2012. 8. 24)를 통보함.

■ 삼성중공업

-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동자협의회와 사측은 성과이익배분금(PS) 지급에 대해 4차례 노사협의를 실시함. 2월 사측은 전체 근로자에게 PS 325%(1인당 평균 550만 원)를 일방적으로 지급함.

- 이에 2월 3일부터 노동자협의회 상근간부 12명은 협의회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함.

【주요 쟁점(노<사>)] ▲PS 기본급 550% 요구 <PS 기본급 325% 지급>

※ 노측, PS 추가지급(225%) 요구 등 강경한 입장이나 사측은 PS가 그룹방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 2월 6일,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이용근)은 성과이익배분금(PS) 추가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30m)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함. 주요 요구사항은 일방적 PS지급 등에 대한 사측의 공개 사과와 PS(기본급의 225%)의 추가지급임.

- 2월 7일부터 대의원 88명이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농성장을 지원함.

- 2월 9일, 거제조선소장은 협의회 사무국장을 만나, 사태해결 방안 등을 논의함.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노사는 주말 2차례 실무협의를 실시했으나 진전 없이 종료함.
- 협의회는 요구안은 다음과 같음. ① 노동자협의회 인정, ② 감사관련 대책 및 부문 노사 합의사항 인정, ③ 고과책정 및 NWNP(무노동무임금) 및 87코드(무단이탈) 관련, ④ PS일방적 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 ⑤ PS 325% 이상 지급 등임.
- 2월 15일, 거제조선소장은 고공농성 크레인에 올라가 협의회 회장과 면담을 실시함.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르기로 결정함.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크레인 농성종료' 결의가 통과되어 협의회 회장은 크레인에서 내려옴. 그러나 노사 대표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회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결의함.

■ 대우조선해양

- 2월 20일, 노조는 회사 매각관련 총파업 찬반투표를 찬성 85.6%로 가결함.
※ 투표결과: 재적 7,057명 중 투표 6,387명, 찬성 6,045명(85.6%), 반대 329명.
- 2011년 12월 19일, 노조는 거제시 시장과 의회의장 각 면담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 방향을 설명하고 및 협조를 당부함. 그러나 정부가 2011년 12월, 정부 보유지분에 대한 재매각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1월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주간사를 선정하여 2012년 4월경에 매각착수 계획을 발표하기로 함.
- 이에 노조는 노조의 참여 없이 일괄매각이나 고가매각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즉각적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겠다고 예정하고 있음. 특히 매각 주간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골드만삭스의 즉각 퇴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 지분은 분산소유구조를 통한 국민기업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농심켈로그

- 농심켈로그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식품(시리얼)제조업체 외투기업(켈로그(미국) 91%, 농심(한국) 9%)이고, 노조는 한국노총 화학노련 소속임.
- 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1월 10부터 파업 중임(참가조합원 35명).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비조합원(관리직 및 계약직)을 투입하여 전체 2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 가동 중임.

【노<사> 쟁점(2.2 및 2.8 수정안)】

▲기본급 6.8% 인상 및 gift card 추가 20만 원 <기본급 6.2% 인상 및 gift card 30만 원 지급> ▲생산장려금 200만 원 지급(+기본급 8.5% 인상 시 철회 가능) <수용불가> ▲근무형태 변경 시 “3월 전 협의” <“2월 전” 협의> ▲단협상 쟁의행위 불참자(보일러실, 폐수처리장 근무자) 조항 삭제 <수용불가> ▲검토 중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제공 형태 변경 시 최소 3일 전 통보>

【당초 노<사> 주요 쟁점】

- ▲기본급 8.8% 인상 및 gift card 50만 원 지급 <기본급 5.9% 인상 및 gift card 30만 원 지급> ▲경영성과급제 조정(등급 간 편차 축소) <현행 유지> ▲학자금 지원 확대 <현행 유지> ▲경조금 인상 <일부 인상> ▲퇴직금제도 변경(단수법정제 → 누진제) <현행 유지> ▲근무형태변경시 노사 합의 <현행 유지(노사 협의)>
 - 2월 9일 임단협, 임금인상 등을 잠정합의하는 데 이룸.
 - 2월 10일경,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함(68.5%, 재적 35명 중 투표 28명, 찬성 24명).
 - 2월 13일자로 전원 업무복귀를 결정하고, 17일에는 조인식을 개최함.
- ※ 잠정합의 주요 내용: ▲기본급 6.4% 인상 ▲생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기타사항은 추후 조정

◆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 등, MBC 파업 적극 지지

- 1월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논평을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1월 26일 MBC 기자들이 보도책임자 사퇴를 촉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늘(1월 30일) 06:00부터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하면서, “MBC기자들과 노조의 파업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말 그대로 정론직필의 언론인으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정권의 부역방송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역사 속에 사라지느냐의 막바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논평함. 이에 민주노총은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민주노총,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조설립 필증 교부 주장

- 2월 9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반려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면서, 본 조직인 청년유니온에도 노조로서의 범

적지위가 시급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논평함.

- 특히 “그동안 고용부는 청년유니온에 구직자와 실업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해 왔지만 이는 더 이상 명분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노총, 근로시간특례업종 대폭 축소 요구

- 1월 31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합의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 있음을 밝힘.
- 노사정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였으나, 특례대상 업종의 범위, 연장근로 상한설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조율에 실패했음. 특히 특례업종 축소와 연장근로의 상한 설정에 대해 막가파식 반대주장만 하고 있는 경총 등의 사용자 단체를 강력히 규탄함.
- 한국노총은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고 근본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주·월·연단위의 총 근로시간의 상한 및 연속휴게시간(11시간)의 설정을 기본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과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중소기업지원 방안 강구, 운수업 등 상시 장시간 노동 업종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민주노총, 실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 발표

- 2월 1일, 민주노총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실행방향 제안’이라는 브리핑 자료를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정부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 제한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장시간노동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침을 발표한 것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며 그 실행방향(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향후 추진과정 쟁점 및 과제를 제안하면서 ‘특별법 제정은 근로기준법 개정 및 행정해석 폐지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¹⁵⁾

○ 금속노조, KEC에 대한 탄압중단을 촉구

- 2월 9일, 금속노조는 2월 8일 대구지법 항소심에서 KEC 파업과 공장점거로 구속되었던 현정호 지회장과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하면서, 사법부가 분신해서 치료 중인 노동자를 법정 구속시키는 전례 없는 짓

15) 정부의 장시간노동 개선 추진에 대한 민주노총의 세부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노동부 행정해석 폐기(先 폐기 後 근기법 개정) ②근로시간 특례제도 정비(폐지 원칙, 대폭 축소·개선) ③유연노동시간제 추진 전면 중단 ④특수건강진단 대상 확대 ⑤기획감독(수시감독) 실시 ⑥시간제일자리 확산 중단 ⑦장시간노동 개선 지원 마련 등임.

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 KEC 투쟁 3년 동안 비인권적·폭력적 노조탄압이 진행되었고 어용노조를 통한 민주노조 와해가 시도되었으며, 2012년 2월에는 16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면서, 금속노조는 KEC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 금속노조 등, 공정한 현대차 불법과건 판결 촉구

- 2월 17일,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사내하청 3지회는 현대차 불법과건과 관련하여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질질 끌다가 2012년 2월 23일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회사가 “이 사건의 쟁점인 도급과 과건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법적 시각에서 작성된 논문들만 존재하였을 뿐 계약법적 시각에서 연구한 논문은 전무하였음.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국내 저명 대학의 민법 교수의 의견서가 완성될 예정이므로 귀부에서 이를 참작할 때 좀 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문서를 보내 판결 연기를 요구한 바 있음을 확인함.
- 회사가 논문을 운운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이 이번 불법과건에 대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최소한의 양심과 권위가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힘.

○ 한국노총,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우려 표명

- 2월 10일, 한국노총은 2월 9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론사 부장단과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정치참여가 도를 넘어섰다”, “노조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데 걱정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함.
- 이에 한국노총은 “미국의 AFL-CIO(미국노총)는 민주당과, 영국의 TUC(영국노총)는 노동당과, 일본의 랭고(일본노총)는 민주당에 직접 참여 혹은 연대를 통해 정치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대다수 선진국의 노동조합들이 활발한 정치 참여를 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해 “도를 넘어섰다”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스스로 ‘구시대적 노동 행정관’을 갖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한국노총, 농협금융지주 대표 임명에 대한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 2월 20일, 한국노총은 권태신 씨의 농협금융지주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함. 이 발표에서 권태신 국가경쟁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농협금융지주 대표

로 임명한다는 소식에 대해, “금융권 임원 자리가 대통령 측근들의 노후대책 자리로 전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특히 한국노총은 “농협은 농민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자주적인 ‘협동조합’으로 조합 운영에 국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농협을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쪼개고 신경분리를 밀어붙이더니 이젠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인물을 낙하산 인사하여 농협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권태신 씨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협동조합인 농협의 경영과 운영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중단할 것을 촉구함.

○ 건설기업노조연합, 건설현장 주5일제 도입 주장

- 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건설기업노조연합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2011년 건설업 근로시간인 연 2,055시간, 월 171시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노조 자체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 본사는 최소 연 2,250시간이고, 건설현장의 연 2,900~3,400시간(국내현장은 최소 연 2,900시간, 해외현장은 최소 연 3,100시간)에 이른다고 주장함.
-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특례업종을 축소한다고 하나, 건설업은 특례업종도 아니면서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고 하면서,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5일근무제 시행 대책과 일자리 나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한국노총, 2012년 임금인상 요구율 9.1%로 결정

- 2월 15일, 한국노총은 2012년 임금인상요구율을 9.1%로 결정함(비정규직 19.4% 인상, 최저임금 시급 5,558원 제시).
- 가구당 생계비(월 4,484,872원), 물가상승률 전망치(3.3%), 비맞벌이 비율(87.6%)을 반영한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할 생계비(월 4,058,397원)’의 76% 수준인 3,068,148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1년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2,812,057원의 9.1%(256,091원)를 임금인상요구율로 결정했음.
-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정규직 임금인상액과 동일한 금액(256,091원)을 적용한 19.4%(2011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월 1,320,000원)로 결정했고,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월 정액임금(2,323,125원)의 50% 수준인 1,161,563원(시급 5,558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정했음.

○ 금속노조,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최종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 2월 23일,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의제를 확정된 것으로 금속노조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현대차에 요구함.

【고용노동부에 요구】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내하도급 관련 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사내하청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할 것 ▲사내하청 간접고용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정규직화 입법을 실시할 것 ▲모든 사내하청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특별민관공동조사팀 구성, 5개월 조사 8월 발표)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이행감독팀을 구성하고 대법 판결 이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들은 불법파견 업체로서 즉각 폐업조치할 것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

【현대차에 요구】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당장 이행 ▲정몽구 회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즉각 실시 ▲비정규직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 ▲현대차 비정규직조합원들의 조합활동 보장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

○ 금속노조, 콜텍 부당해고사건에 대한 논평 발표

- 2월 23일, 금속노조는 '같은 정리해고, 다른 판결 ... 기가 막힌 대법판결'이라는 논평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내용】

▲오늘(2.23) 10:00 대법원 2부는 부당해고(행) 09두 154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 관해 원고(콜텍약기)의 상고를 기각하는 최종판결을 내렸으나, 14:00 대법원 3부에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주)콜텍의 해고무효확인소송 2010다3629은 원고(조합원 24명)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되었음.

▲콜텍·콜텍 노동자의 부당해고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예상했으나, 분명 같은 사자에게 같은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한쪽은 부당해고라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고 판결함

- 이에 금속노조는 “해외공장으로 물량을 다 빼돌리고 위장폐업을 한 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회사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렸어야 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과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논평함.

◆ 경영계 동향

○ 경총, 새누리당 비정규직 공약에 대한 입장 발표

- 2월 7일, 경총은 새누리당 비대위가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 공약'에 대해 “제시된 정책들은 노동시장과 기업의 현실은 외면한 채 노동계의 주장들만 총망라한 것”이라고 밝힘.
- 경총은 “만일 이러한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기업의 투자악화로 인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결정 사항에 해당하는 인력운용의 형태를 사실상 정규직 형태로만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이며 개입”이라고 주장함.

- 또한 비정규직 사용의 필요성은 그 업무가 “핵심업무냐, 주변업무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지, “상시·지속업무” 여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함. 또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비정규직 공약을 제시한다면 막연한 기대심리 상승으로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밝힘.

◆ 정부, 국회 등 동향

○ 고용노동부,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김 모(18세) 군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실습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임.
- 이에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금품 미지급(2,038백만 원), 현장 실습생 연장근로한도 위반,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자 총 66건, 과태료 392백만 원(13건), 사용중지 3건 등의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밝힘.¹⁶⁾

○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각 법률 공포

- 지난 2011년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어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에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16) 특별근로감독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금품 체불)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미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278백만 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상여금 미지급 1,312백만 원, 일반근로자의 통상임금 잘못 산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미지급 등 277백만 원 도합 2,038백만 원 체불
- ② (근로시간 위반)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월 78명 연장근로한도 초과
- ③ (연소자 미인가)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에 사용
- ④ (산업안전법 위반)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한 총 86건에 대하여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 미보고,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설치,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

협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법률이 2월 1일자로 공포됨.

-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의 차별시정 요구에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함. 「파견법」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
- 「최저임금법」은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1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되도록 함. 「근로기준법」은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

○ 대법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 2월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제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함.
- 대법원은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환영 성명을 내었고, 고용노동부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음.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를 파견에 따른 노무지휘로 간주하는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힘. **KL**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